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83회 임시회

## 검 토 보 고 서

2026. 4. 21.(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출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  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26. 4. 8.(수)
- 회부일 : 2026. 4. 15.(수) (의안번호 : 26-43)

## 2. 제출이유

- 통합돌봄 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을 증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(안 제2조)
  - 정원의 총수: 1,457명 → 1,479명(증 22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: 1,419명 → 1,441명(증 22명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(안 별표 3)
  - 총 계: 1,457명 → 1,479명(증 22명)
  - 일 반 직 계: 1,446명 → 1,468명(증 22명)
  - 5급(보건소) : 10명 → 11명(증 1명)
  - 6급 이하 계: 1,368명 → 1,389명(증 21명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 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- [별표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
- 입법예고: 2026. 3. 19. ~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## 5. 검토보고

### ① 조례의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통합돌봄 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을 증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② 주요 개정내용

#### ○ 주요 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변경(안 제2조)
  - 정원의 총수: 1,457명 → 1,479명(증 22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: 1,419명 → 1,441명(증 22명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(안 별표 3)
  - 총 계: 1,457명 → 1,479명(증 22명)
  - 일반 직 계: 1,446명 → 1,468명(증 22명)
  - 5급(보건소): 10명 → 11명(증 1명) \* 6급 이하 계 감 1명분 반영
  - 6급 이하 계: 1,368명 → 1,389명(증 21명)

### ③ 기대효과

-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의 안정적 수행 기반 확보, 지역 현안 사업 추진력 제고,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 만족도 제고,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효과로 볼수 있음.

### ④ 타 자치구 증원 개정 현황

- 서울특별시 2026년 상반기 정원조례 개정(증원) 中 자치구 7개
  - 용산 22명/도봉 25명/성동 23명/금천 23명/중랑 34명/송파 36명/영등포 56명

## 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통합돌봄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인력 기반을 마련하고,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인력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조직 비대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, 효율적 인력 운용 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.

##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6. 1. 2.] [법률 제21066호, 2025. 10. 1., 타법개정]

**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**조례**로 정한다.

##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[시행 2026. 2. 3.] [대통령령 제36069호, 2026. 2. 3., 일부개정]

**제24조(정원의 관리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

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29조(직급별 정원)**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30조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 <2020. 3. 10.>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별표 3]

**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**

직급별 \ 기관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,479	1,479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 계	1,468	1,468			
3급	1	1			
4급	10	8	1	1	
5급	67	39	1	11	16
6급 이하 계	1,389	1,389			
전문경력관 계	1	1			
별정직 계	9	9			
5급 상당	2	1	1		
6급 상당 이하 계	7	7			
연구직 계	1	1			